

## 중재기관평가모형을 통한 중국 지방중재위원회의 특성연구

A Study of Chinese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Based on  
Arbitration Institution Evaluation Model

정용균\*

Yong-Kyun Chung

이승석\*\*

Seung-Suk Lee

〈목 차〉

- I. 서론
- II. 중재기관 평가모형
- III. 중국 지방중재위원회 개관
- IV. 중국 지방중재위원회 분석
- V. 정책적 함축성
- VI. 결론

주제어: 중국, 지방중재위원회, 중재기관평가모형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중재인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비즈니스학과 석사과정 학생

## I. 서론

중국에서의 상사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중국의 지방 중재위원회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1994년 중재법 제정을 전환점으로 하여, 지방중재위원회들에게도 섭외중재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중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중재법 제정이전에는 중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인 CIETAC과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 두 기관만이 섭외중재사건을 담당할 수 있어서, 외국투자자들은 주로 CIETAC의 특성에 관하여 유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경중재위원회(BAC)와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방중재위원회도 생겨나고 있어서 이들 지방중재위원회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Johnson(20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법에서는 ‘외국관련’ 분쟁의 경우에만 중국외부에서의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관련’ 분쟁은 회사의 영업지가 외국인 것을 의미하거나 계약대상이 중국 영토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측 파트너가 중외 합작기업을 중국인이 운영하는 회사형태로 할 것을 요구할 경우, 회사의 영업지는 중국 국내가 되어서 회사 영업지는 더 이상 외국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외국투자자는 중재합의를 할 때, 불가피하게 중국 국내중재기관을 선택하기도 한다.<sup>2)</sup> 따라서 중국 지방중재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리젠화(2010)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섭외중재사건을 다룰 수 있는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의 숫자는 202곳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sup> 周芬棉(2010)에 의하면 지방중재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무한중재위원회가 9,770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하여 사건 처리건수로는 수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광주, 중경, 북경중재위원회는 중재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중국의 중재를 연구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CIETAC을 연구한 데 비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로는 성백영(1998), 김석철(2005), 윤충원·하현수(2007) 등이 중재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이주원(2004), 신군재(2004), 윤진기(2005), 우광명(2006), 홍성규(2008) 등의 CIETAC에 대한 연구가 뒤를 이었

1) 중국에서는 기관중재만 허용된다. Tao, Jinzhou and Clarisse von Wunschheim, "Articles 16 and 18 of the PRC Arbitration Law: The Great Wall for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23, No. 2, 2007, pp.309-326.

2) Johnson, Graeme, "Bridging the Gap Between Western and Chinese Arbitration System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24, No. 6, 2007, pp.567-568.

3) 리젠화,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발전과 특징",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여름호, p.37 참조.

다. 그러나 최근 지방중재위원회의 하나인 북경중재위원회(BAC)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등 지방중재위원회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202개나 되는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향후 중국에서의 중재 동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차별성은 본 연구가 중재기관평가모형을 수립한 점이다. 종래의 중재관련 연구는 중재관련 어떤 한 가지 특성에 집중하여 분석하여 왔다. 예를 들어 김경배(2007)는 중재인의 중립성을 연구하였으며, 이강빈(2009)은 당사자 자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김선정(2008)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한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어떤 중재기관의 전체적 모습을 조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중재기관의 여러 속성을 결합하여 중재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중재기관 평가모형을 먼저 정립한 뒤에 그 모형을 토대로 하여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 II. 중재기관 평가모형

본 장에서는 중국의 중재위원회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수립하고자 한다.<sup>4)</sup> 기존 문헌은 주로 중재기관의 한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중재기관을 평가하여 왔다. 그러나 어떤 중재기관도 모든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정의 측면에서 우수한 중재기관이 다른 측면에서는 단점을 노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중재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모습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아직 중재기관을 전체적 차원에서 평가모형을 수립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모형이 완벽할 수는 없다. 다만 전체적 차원의 평가를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Hindess(1977)에 의하면, “사실(fact)들이 어떠한 이론적 선입견이 없이, 조심스럽게 수집되고 서술된 뒤에 과학자들은 관찰된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형을 구축한다. 모형은 사실들을 질서있게 재구축하여 현실을 잘 파악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5)</sup> 하이예크 교수는 모형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 추상화함으로써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톤 프리드만교수는 이론(theory)이나 모형(model)은 많은 변수를 포함할수록 이론의 강점이 적어진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설명변수를 많이 포

4) 중국에서는 중재기관을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mmission)이라고 칭한다. Tao, Jinzhou and Clarisse von Wunschheim, “Articles 16 and 18 of the PRC Arbitration Law: The Great Wall for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23, No. 2, 2007, p.311 참조.

5) Barry Hindess, *Philosophy and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The Harvester Press, 1977, p.1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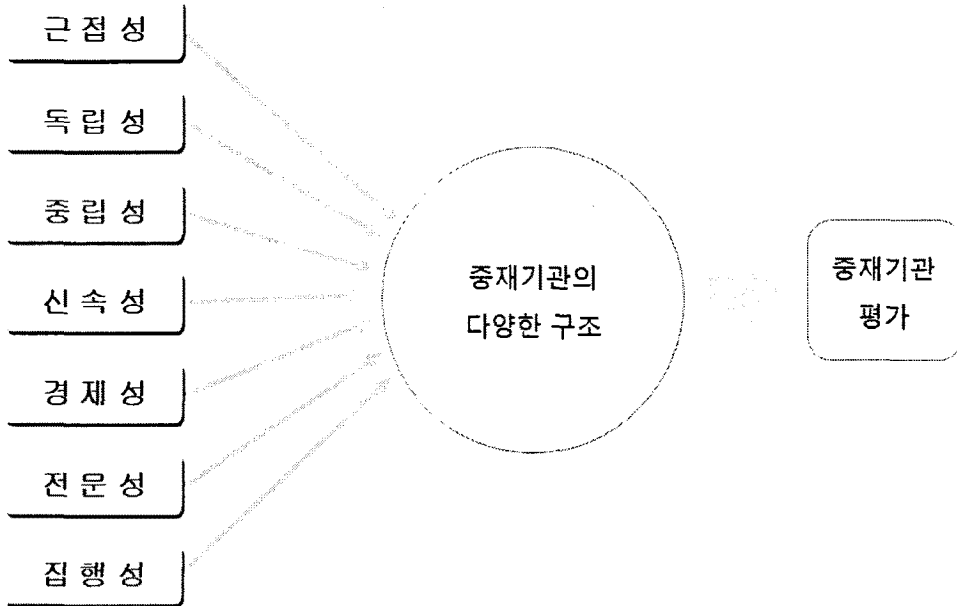
합하면 할수록 회귀분석의 R2값이 커져서 외견상으로는 모형의 설명력이 커지기는 하나, 이와 동시에 모형의 차별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톤 프리드만 교수는 소수의 몇 가지 핵심설명변수로 종속변수를 상당히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은 이론, 좋은 모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기관 평가모형은 너무 많은 평가기준을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평가기준의 수를 대폭 줄이면, 중재기관의 전체적 특징을 잃어버리기 쉽다. 따라서 모형은 현실을 의미있는 방향으로 재구축하기 위하여 단순성과 복잡성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가 설명하고자 하는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는 그 수가 200개가 넘는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가 직면하는 복잡한 현실이다. 만일 복잡한 현실을 모두 다 관찰하고 설명하려면 200여개의 중재위원회 각각을 모두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연구방법을 채택한다면 전체적 공통점 보다는 세세한 차이점에 함몰될 것이고 논문 1편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준을 통하여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선택한 기준들은 중재분야나 기타 관련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 모습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것들이다.<sup>6)</sup> 사실 본 연구의 시도는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이론적 근거가 약한 하나의 시도이다. 다만 Popper(1963)의 주장대로, 과감하게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을 통해서 진리성을 평가할 뿐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중재기관평가모형은 하나의 가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은 근접성여부이다. 중국의 민간조정에 대한 연구에서, Read and Michaelson(2009)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민간조정 사용비중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은 북경시와 여러 군데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시민과 농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은 북경시민에 비하여 조정을 활용한 사례가 높게 나타났다. Wall and Blum(1991)은 중국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법당국에 호소하지 않고 조정을 활용하는 것은 농촌에서 행정관청 소재지까지 거리가 먼 것을 들고 있다.<sup>7)</sup> 중국은 광활한 영토를 소유한 관계로, 지방 곳곳 까지 중앙정부 관리가 다 파견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중재와 관련이 많은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활용도에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하다면, 중재의 경우에도 활용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6)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중재기관평가모형에는, 중요하지만 포함되지 않은 평가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중요하지 않아서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만 포함된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차기 연구 주제로 남기고자 한다.

7) Wall, James and Michael Blum, "Community Medi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5, No. 1, 1991, pp.3-20.



(그림 1) 중재기관 평가모형

본 연구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얼마나 용이하게 중재기관에 접근가능한가가 중재기관에 대한 활용도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접근성을 중재기관 활용도의 기준으로 포함시켰다. 둘째 기준은 중재기관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은 중재기관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중재기관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재기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은 지역보호주의라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역보호주의란 지방정부가 중재기관의 판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Peerenboom(2001)과 김선정(2008)에 의하면, 최근 중재위원회들이 정부조직에서 이탈하여 독립적 민간기관이 되었으나 그 인적 구성은 여전히 관료나 공기업과 관련이 깊다.<sup>8)</sup> 따라서 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정부조직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Peerenboom(2001)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의미하는 판사가 중요한 중국에서는 중재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쉽다고 보았다.<sup>9)</sup> 더구나 홍성규(2008)에 의하면 법원 역시 중재절차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당사자자치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8) 김선정, “중국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 사유인 공서와 법의 지배,”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8권, 제3호, 2008년 12월, p.36 참조.

9) Peerenboom, Randall, “Seek Truth from Facts: An Empirical Study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the PRC”,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49, 2001, pp.249-327.

〈표 1〉 중재기관 평가모형의 세부 내용

평가기준	내 용	참고문헌
근 접 성	분쟁당사자가 얼마나 쉽게 중재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	Wall and Blum(1991) Read and Michealson(2008)
독 립 성	중재기관이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에 대한 기준	Peerenboom(2001) 김선정(2008), Thorp(2007)
중 립 성	중재인이 양 분쟁당사자에게 얼마나 불편 부당하게 판정하는 가 여부	Yuen(2007), Diamant(2000) 김경배(2008)
신 속 성	중재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는가 여부	Fei(2008), Reinstein(2005)
경 제 성	중재비용이 얼마나 저렴하게 드는지 여부	장승화(2010), Reinstein(2005)
전 문 성	중재인이 중재사건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가의 여부	Wang(2008), 김선정(2008), Diamant(2000)
집 행 력	중재판정이 용이하게 집행될 수 있는가 여부	Peerenboom(2001), 김선정(2008), 정용균(2010)

Thorp(2007)에 의하면, 법원의 판사들은 중재위원회가 법원과 동등한 권력을 갖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방중재위원회의 경우 독립성은 중재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평가된다. 셋째 기준은 중재인의 중립성 여부이다. Yuen(2007)은 중재판정부의 중립성이 중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김경배(2008)에 의하면, 중재인은 고지의무가 있고 중재인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재인의 중립성을 위반하였다면 중재판정 취소사유 및 집행거부 사유가 된다.<sup>10)</sup> 그러나 1995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중재기관은 정부의 행정기관이 설립하였기 때문에 중재기관은 행정부서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중재기관 소속의 중재인은 간접적으로 행정부서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어서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중재위원회들의 중재판정부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넷째 기준은 신속성이다. 중재가 소송보다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단심제 등을 통한 중재절차의 신속성에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중재절차가 대체수단인 소송

10) 우리나라 대법원은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규정한 중재법 제13조 1항의 법적 성격을 강행규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4.4.29 선고 2004다47901판결, 김경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8권, 제1호, 2008년 3월, p.35 참조.

절차보다 신속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설령 중재판정이 신속하게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집행대상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판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외국법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Fei(2008)에 의하면, 중국최고인민법원(SPC) 자체가 집행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sup>11)</sup> 이러한 경우, 과연 중재절차가 신속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속성이 지켜지는지를 중재기관의 평가 요소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다섯째 기준은 경제성이다. 경제성이란 중재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경제성 역시 일반적으로 중재가 소송보다 경제적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중재가 소송보다 반드시 비용이 적게 드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특히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저명한 중재인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sup>12)</sup> 장승화(2010)에 의하면, 실무적 차원에서 중재 역시 중재인에 대한 보수 뿐 만 아니라, 분쟁당사자를 대리하는 국제중재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sup>13)</sup> Reinstein(2005)에 의하면, 중국에서 승소하려면, 그 지역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sup>14)</sup> 이러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국의 변호사, 상대방 국가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중재에 임하게 된다. 그런 경우라면 중재가 소송제도보다 반드시 비용이 덜 든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성은 중재기관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가모형에 포함시켰다.

여섯째 기준은 중재인의 전문성이다. 김경배(2008)가 지적하듯이 “좋은 중재는 좋은 중재인이다”라는 말처럼 중재의 성공여부는 중재인에게 달려있다.<sup>15)</sup> 결국 중재란 중재인이 가장 핵심적인 존재이므로 중재인이 얼마나 중재사건에 대하여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公人인 법관의 경우에도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Wang(2008)에 의하면, 전체 법관의 3분의 2가 정규 법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sup>16)</sup> 이러한 상황은 조정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Diamant(2000)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로운 정부에는 충성도가 높으나 분쟁해결의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이 조정인으로 임명되어, 전문성이 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7)</sup> 전체적으로 중국

11) 심지어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Fei, Langfang, “Implemen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China: A Case Study,”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 4, No. 2, 2008, pp.123-136.

12)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상사중재규칙을 별도로 제정한 이유도, 중재인의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13)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자국의 변호사 뿐 만 아니라 분쟁상대방 국가의 변호사도 고용하는 것이 유리한 중재판정을 받는데 중요하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중재인의 보수 뿐 만 아니라, 분쟁당사자를 대리하는 자국내 변호사와 외국변호사 비용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장승화, “국제중재: 중재인의 시각,” 『제6기 중재CEO 아카데미자료-7』, 2010년 5월 6일.

14) Reinstein, Ellen, “Finding a Happy Ending for Foreign Investors: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di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2005, Vol 16, pp.37-72.

15) 김경배, 전제논문 p.32 참조

16) Wang, David, “Judicial Reform in China: Improving Arbitration Award Enforcement by Establishing a Federal Court System,” *Santa Clara Law Review*, Vol. 48, 2008, pp.649-679.

의 분쟁해결담당자 상당부분은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재의 경우 중재인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기준은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이다. 지방중재위원회로부터 아무리 유리한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무에 있어서 집행이 어렵다면, 중재판정의 신뢰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행가능성은 중국의 법적, 제도적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기준이다. 차경자(2005)에 의하면 중국의 CIETAC 섭외중재판정 중 집행되지 않은 37건 중 16건이 집행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이다. Reinstein(2005)에 의하면, 회사들이 끊임없이 합병하고 분화하는 중국의 비즈니스환경에서 재산 소유주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sup>18)</sup> 따라서 지방중재위원회가 내린 판정이 중국 내에서 집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Ⅲ. 중국 지방중재위원회 개관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의 성장세를 살펴보면 이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중국중재위원회의 안전처리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00년 중국 16개 중재기구의 총안전처리건수는 9,577건, 쟁의금액은 221억위안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202개 중국의 중재위원회 안전처리건수는 74,811건으로 약 7배가 증가하였다.”<sup>19)</sup> 안전처리건수를 기준으로 중국의 중재위원회와 외국의 중재기관과 비교해보면 미국중재협회(AAA) 중재처리건수는 2000년에 510건이었다가 2009년에는 836건으로 증가하였다. 런던국제중재법원은 2000년에 81건을 처리하였다가 2009년에 232건으로 증가하였다. 스웨덴 스톡홀름상업회의소 중재원은 2000년에 73건을 처리하였다가 2009년에 215건으로 증가하였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는 2000년에 41건을 처리하였다가 2009년에 사건 처리건수가 114건으로 증가하였다. 요약하면 외국중재기관의 사건처리건수는 2000년에서 2009년 10년동안 2-3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sup>20)</sup> 따라서 중국 중재위원회의 중재처리건수 증가속도는 외국의 주요 중재기관들에 비하여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21)</sup>

17) 조정인의 상당수는 여성인 경우가 많다. 이들 여성들은 문맹인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Diamant, Neil J.,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Chin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4, No.4, August 2000, pp.523-546.

18) Reinstein, Ellen, 전제논문 pp.58-59 참조.

19) 정용관·이승석, “중국지방중재위원회의 현황과 CIETAC과의 비교,” 「2010년 춘계중재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중재학회, 2010년 5월, pp.68-87.

20) 周芬棉 “중국중재망” 2010년 4월

21) 정용관·이승석, 전제논문, pp.68-87.



중국지방중재위원회 세부내부를 살펴보면, 2009년 현재, 무한중재위원회가 중재사건 처리 건수 면에서 지속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광주 중재위원회와 중경중재위원회가 사건처리건수에서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쟁의금액 기준으로는 2009년에 쟁의금액 10억원을 넘는 중재위원회는 16개소이며 2008년에는 14개소였다. 쟁의금액 관점에서 1위는 172억위안의 CIETAC이 차지하였고, 북경중재위원회는 88억위안으로 2위, 광주중재위원회는 67억위안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 규모는 지역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재사건 처리건수가 1천건을 넘는 거대 규모의 중재위원회가 12개소 나타나는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재사건 처리건수가 50건 미만의 중재위원회도 35개소에 이르고 있다.

〈표 2〉 중국중재위원회 처리건수 및 쟁의금액(2009년)

순위	중재위원회	처리건수	쟁의금액 (단위: 억위안)
1	무한	9,770	55.70
2	광주	4,345	67.00
3	중경	2,238	18.89
4	심천	1,984	26.49
5	서안	1,858	13.50
6	북경	1,830	88.29
7	주마덴	1,517	20.46
8	CIETAC	1,482	172.38
9	상해	1,187	44.32
10	무석	1,150	11.75

자료: 周芬棉, 중국 중재망, 2010년

중재처리건수가 큰 중재기관은 주로 북경, 상해, 광둥 등 연안지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Johnson(2007)이 말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업간 분쟁도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중재사건도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IV. 중국 지방중재위원회 분석

### 1. 근접성

Wall and Blum(1991)은 중국 농촌에서 소송보다는 민간조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농촌의 촌락에서 사법당국이 있는 행정관청 소재지까지 거리가 먼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sup>22)</sup> 중국은 광활한 영토를 소유한 관계로, 지방 곳곳 까지 중앙정부 관리가 다 파견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모택동은 건국초기에 주민자치를 강조한 바 있는 데, 이는 중앙정부의 사법권이 지방 곳곳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23)</sup> 대부분의 행정관청은 농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정을 담당하는 농촌의 마을위원회는 농촌 촌락마다 설치되어 있다.

〈표 3〉 중국 지방중재위원회 지역분포(2010년)

지 역	중재위원회 명칭	중재위원회 수
호북성	무한, 양변, 십언, 형주, 의창, 형문	6
광둥성	광주, 선진, 혜주, 주해, 소관, 불산, 청원, 산두, 중국해사중재위원회광동지점, 조경, 강문, 매주	12
섬서성	서안, 보계, 위남, 연안, 함양, 한중, 동천	7
하남성	주마덴, 정주, 평정산, 안양, 락양, 삼문협, 초작, 푸양, 신향, 남양	10
강소성	무석, 남경, 양주, 소주, 염성, 서주, 연운항, 상주, 회안, 남통, 태주, 진강, 숙천	13
산둥성	청도, 제남, 제녕, 치박, 위해, 임기, 연태, 유방, 일조, 동영, 빈주, 덕주, 조장, 래무, 태안, 하택, 료성	17
사천성	성도, 로주, 락산, 덕양, 면양, 의빈, 광원, 남충, 자공, 수녕, 내강, 반지화, 파중, 미산, 아안,	15
호남성	침주, 장사, 상담, 소양, 상덕, 주주, 루저, 익양, 형양, 장가계, 역양, 영주,	12

22) Wall, James and Michael Blum, 전계논문. pp.3-20.

23) Wall, James and Michael Blum, 전계논문. pp.3-20.

지역	중재위원회 명칭	중재위원회 수
절강성	항주, 온주, 태주, 소흥, Ning파, 금화, 가흥, 호주, 주산, 리수, 구주	11
하북성	석가장, 창주, 형대, 감단, 승덕, 보정, 장가구, 형수	8
요녕성	심양, 부신, 대련, 안산, 조양, 본계, 무순, 단동, 호로도, 철령, 요양, 영구, 금주, 반금	14
북건성	복주, 하문, 천주	3
안휘성	회북, 합비, 마안산, 무호, 회남, 황산, 동릉, 부양, 지주, 방부, 숙주, 박주, 안경, 저주	14
길림성	길림, 장춘, 송원, 요원, 백산, 통화	6
신강성	오로목제, 극랍마의	2
흑룡강성	하얼빈, 대경, 목단강, 학강, 흑하, 가목사, 칠태하, 계서, 제제하얼	9
운남성	곤명, 곡정, 소통, 옥계	4
귀주성	귀양, 준의, 룩반수	3
칭해성	서녕,	1
내몽골성	적봉, 악이다사, 포두, 오해, 호륜페이	5
강서성	남창, 신유, 경덕진, 평향,	4
해남성	해구	1
광서성	류주, 계림, 남녕, 흠주, 복해, 귀항, 오주	7
산서성	태원, 진성, 운성, 장치, 대동, 양천	6
닝하성	은천, 석취산	2
감숙성	천수, 난주, 가육관	3
장성	라사	1
중경자치구	중경	1
북경자치구	북경, CIETAC	2
상해자치구	상해	1
천진자치구	천진	1
내몽골자치구	호화호투	1

자료 : 정용관 · 이승석, 전개논문, pp.77-78.

이러한 높은 근접성으로 인해서 민간조정 활용도가 높은 것이다. 만약 중재위원회가 각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면 중재위원회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중재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중재기관 활용도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들이 얼마나 중재기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지방중재위원회의 지역적 분포를 조사하였다. 만일 여러 성이나 자치구에 중재위원회가 고르게 설치되어 있다면, 중재의 수요자인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손쉽게 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중재법이 시행된 후 지방중재위원회는 전국의 4개 직할시, 27개 성 소재지 도시, 141개의 비교적 큰 도시에 모두 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중국지방중재위원회의 특징은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sup>24)</sup> 따라서 절대적, 양적 기준으로 보면 중국기업들의 중재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중재기관의 총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전체적 접근성이 반드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성별 및 자치구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산둥성이 17개소의 지방중재위원회가 소재해있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 2위로는 15개소가 소재한 사천성이었다. 3위는 요녕성과 안휘성에 14개소가 소재하였다.<sup>25)</sup>

산둥성이나 광둥성, 강소성, 절강성 등 지방중재위원회가 10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중국의 연안지역으로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의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상사분쟁도 많은 지역이라고 추정된다. 중국의 공업지구인 동북3성 지역 역시 지방중재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설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심양과 대련시가 위치해있는 요녕성에 14개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흑룡강성에 9개소, 자동차공업의 중심지인 장춘시가 성도인 길림성에 6개소가 설립되어 있다. 한편 화북지역의 중심인 안휘성, 하북성, 하남성에 14개소, 8개소, 10개소가 밀집되어 있다. 그 외에 전통적으로 물산이 풍부한 사천성에 15개소, 호남성에 12개소가 설립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강성, 귀주, 해남, 청해, 영하, 감숙성, 서장, 내몽골자치구 등은 지방중재위원회수가 3개소 이하가 설립되어 있다. 이처럼 중재위원회가 적게 설립되어 있는 지역은 경제발전수준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중국 전역에 걸쳐서 202개의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에는 분쟁이 많은 만큼 중재사건 역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재위원회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제발전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기업 간 분쟁도 적고, 분쟁이 적은 만큼 중재사건 역시 많지 않아서 중재위원회가 적게 설치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중재위원회 개수가 중재사건과 대략 비례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근접성은 양호하다고 분석된다.

24)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전국의 지방중재위원회 수는 160개였다. 그러나 2001년에는 165개로, 2002년에는 168개로, 2003년에는 178개로, 2004년에서 2006년까지는 185개로 변동이 없다가, 2007년에는 200개 200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르러서는 202개로 증가하였다. 정용균·이승석, 전계논문 pp.68-87.

25) 정용균·이승석, 전계논문, pp.68-87.

## 2. 독립성

독립성은 중재기관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중재기관이 외부의 영향력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중재판정은 공정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중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중국의 지역보호주의를 들 수 있다. Clarke(1996)에 의하면, 지역보호주의란 지방정부가 지방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기업이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는 것을 꺼려하고 지방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지방정부는 지방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재기관의 판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Wang(2006)에 의하면, 199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국내중재기관들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행정조직내에 편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재기관들은 행정적 간섭에 심하게 시달려 왔다.<sup>26)</sup> 김선정(2008)에 의하면, 최근 중재위원회들이 정부조직에서 이탈하여 독립적 민간기관이 되었으나 그 인적 구성은 여전히 관료나 공기업과 관련이 깊다.<sup>27)</sup> 그러한 경우 외면적으로는 중재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중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관시에 의하여 여전히 행정기관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창훈·서민교(2007)에 의하면, 관시는 의무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관시 네트워크에 속하게 되면, 서로 간 호의를 주고받을 도덕적 책무를 가지게 된다.<sup>28)</sup>

앞에서 보듯이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 중재사건 처리건수가 1천 건을 넘는 중재기관의 수는 2009년 현재, 12개소에 이르고 있는 반면, 중재처리건수가 1백건 미만인 중재위원회는 70여개소이며, 중재처리건수가 50건 미만의 중재위원회는 35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무한중재위원회나 광주중재위원회, 중경중재위원회, 북경중재위원회와 같이 사건처리건수가 많은 중재위원회는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적일 것이다. 그러나 중재처리건수가 50건 미만 중재위원회들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충원·하현수(2007)에 의하면,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 중 73%의 중재기관이 200건도 안되게 중재사건을 수리하였으며 이들 중재기관들은 중재수수료만으로는 운영비 충당이 어려워져서 대부분의 경비를 중재기관 소재지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sup>29)</sup> Wang(2008)에 의하면, 중국에서 개혁정책이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 예산은 지

26) Wang Wenying, "Distinct Features of Arbitration in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23, No. 1, 2006, pp.55 참조.

27) 김선정, 전계논문, p.36 참조.

28) 이창훈·서민교, "중국비즈니스에서 관시의 역할과 시사점," 「국제상학」, 제22권 제1호, 2007년 3월, p.244 참조.

29) 지방정부는 지방중재위원회의 인사에 관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직공무원들이 직접 중재기관의 주요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다. 윤충원·하현수, "중국의 중재법상 중재기관의 약정과 관련한 중재합의 유효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2권 제3호 2007년 6월, p.89 참조.

방소재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sup>30)</sup> 만일 지방소재기업이 중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지방정부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방중재위원회에 지방소재 기업에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상당수 중국 지방중재위원회는 아직도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 3. 중립성

중재인의 중립성 기준은 공정한 중재판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Yuen(2007)은 중재판정부의 중립성이 중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김경배(2008)에 의하면, 중재인은 고지의무가 있고 중재인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재인의 중립성을 위반하였다면 중재판정 취소사유 및 집행거부 사유가 된다.<sup>31)</sup> 중재절차를 관장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이 과연 중립적인가 하는 문제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중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중재인 수가 많다면, 투명성이 높아져서, 중재인 수가 적은 경우보다 편식과 같은 인적 관계가 작용할 가능성이 적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중재인 숫자가 적다면, 외부기관은 그 소수의 중재인들과 편식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재인의 중립성에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중립성의 대리변수로 중재인수의 공개여부와 중재인 수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재인수가 많을수록 소수의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중재인의 수가 많다면, 자격에 흠결이 있는 중재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공정한 중재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재기관 소속 중재인의 수와 직원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가 개설된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들을 조사하여 중재인과 직원 수를 계산하였다.

조사결과 홈페이지를 아예 개설하지 않는 중재위원회도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도 중재인 수나 직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지방중재위원회도 다수 존재하였다. 또한 중재인수는 제공하고 있으나 직원 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중재위원회도 많았다. 2010년 현재 202개 중국 지방중재위원회 중에서 53개소가 홈페이지에 소속 중재인수를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개소만이

30) Wang, David, 전계논문, p.659 참조.

31) 우리나라 대법원은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규정한 중재법 제13조 1항의 법적 성격을 강행규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4.4.29 선고 2004다47901판결, 김경배, 전계논문 p.35 참조.

직원 수도 밝히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 지방중재위원회 중에서 약 25%의 지방중재위원회가 중재인수를 밝히고 있었다. 중재인수를 홈페이지에 밝힌 중재위원회는 그만큼 투명성이 큰 중재위원회라고 추론할 수 있다. 중재인수 분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재인 수가 많은 중재위원회로는 상해, 남창, 청도중재위원회가 있다. 이들은 500명 이상의 중재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400-499명을 보유한 중재위원회로는 제남, 석가장, 하문중재위원회가 있으며, 300-399명을 보유한 중재위원회는 북경, 태원, 제녕중재위원회가 있다.

〈표 4〉 중국지방중재위원회의 중재인수(2010년)

지방중재위원회	중재인수	직원수
북경	336	15
석가장	01	-
태원	314	12
오해	126	-
포두	98	15
하얼빈	174	8
상해	720	13
남경	188	14
상주	140	0
연운항	151	15
진강	172	16
염성	205	16
온주	207	17
소흥	254	15
동릉	87	17
하문	404	6
남창	547	15
제남	420	14
청도	525	16
연태	174	15
안양	150	-
북해	99	-
해구	158	-
남녕	154	-
영주	57	-
익양	95	-

지방중재위원회	중재인수	직원수
장사	297	19
호화호특	216	15
운성	120	13
형태	182	-
장가구	137	-
서녕	101	-
한중	70	-
연안	220	-
평정산	220	-
제녕	302	-
태안	250	-
동영	176	-
금화	122	-
구주	102	-
면양	118	15
진성	78	-
십언	232	-
호륜패울	5	-
형양	35	-
대련	267	-
합비	200	-
동릉	44	-
무호	106	-
남창	283	15
선양	180	-
래무	110	-
혜주	155	-

자료 : 정용균 · 이승석, 전제논문, pp.75-77.

그리고 중재인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중재위원회는 12개소였다. 그러나 중재인을 1백명 미만 보유하고 있는 중재위원회수는 9개소였다. 이러한 자료에서 보듯이 중재인수도 중재위원회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총 202개 중재위원회 중에서 조사가 가능한 53개 중재위원회 중에서, 중재인 수가 200명 이상 중재위원회 수가 19개소로 나타났으며, 중재인수가 200명 이하의 중재위원회 수가 34개소로 나타났다. 전체



202개 지방중재위원회 중에서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중재위원회가 53개소라면 나머지 75%의 중재위원회들은 자료를 공개하기 꺼릴 만큼 투명성이 약하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 지방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은 미흡하다고 분석된다.

#### 4. 신속성

중재가 소송보다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단심제 등을 통한 중재절차의 신속성에 있다. 중재절차의 신속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가 외국의 중재기관에 비하여 중재절차가 신속한가이고 둘째는 지방중재위원회가 중국 내 기타 중재위원회와 비교해서 신속한가이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설령 중재판정이 신속하게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국법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법원의 집행협조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중급인민법원이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 판정을 내리면, 이는 사전보고제도를 통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이를 재심사한다. 결국 외국중재판정 집행은 걸로로는 단심제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양심제를 취하고 있어서 그만큼 시간이 지연된다. 더구나 Fei(2008)에 의하면, 중국최고인민법원(SPC) 자체가 집행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데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중재절차가 외국의 중재절차에 비하여 신속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Reinstein(2005)은 대표적인 지방중재위원회의 하나인 북경중재위원회(BAC)의 경우, 사건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평균 79일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사건처리가 신속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성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지방중재위원회와 경쟁관계에 있는 CIETAC과 대표적인 지방중재위원회인 북경중재위원회의 중재처리기간을 비교하기로 한다. 이 두 기관은 자료가 개방되어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다. 북경중재위원회는 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CIETAC은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sup>32)</sup> 전체적으로 중재판정부 구성기한, 심리기일 통지, 답변서 제출기한 등을 살펴보면, 북경중재위원회(BAC)의 절차가 CIETAC의 절차보다 더 신속하게 나타났다.<sup>33)</sup> 그러나 신속하다고 해서 절차가 반드시 효율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북경중재위원회는 다루는 사건이 주로 국내중재사건인 반면에 CIETAC은 주로 국제중재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느린 CIETAC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해석

32) CIETAC 중재규칙 제22조

33) 심리기일 통지에 있어서도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제1차 심리개시 10일 전에 심리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고 중재판정부가 동의할 때는 앞당겨 심리할 수도 있다. CIETAC는 1차 구술심리 개최 20일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답변서 제출기간은 북경중재위원회는 15일, CIETAC는 45일로 규정되어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머지 대다수의 지방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도 북경중재위원회와 같이 신속한지는 추후의 연구과제이다.

## 5. 경제성

경제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 중재신청비용을 계산하였다. 중국지방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 비용은 안전수리비와 안전처리비 두 종류로 구성된다. 안전수리비는 중재기관의 안전관리비용이고 안전처리비는 중재인의 안전처리에 대한 보수이다. 중국의 중재위원회는 중재비용 집중수납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중재인에 대한 보수는 중재위원회가 수취했던 중재신청비로부터 지급되어진다. <표5>는 중국지방중재위원회의 중재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중재신청비용은, 일급 단계로 분류된다. 쟁의금액이 1천위안미만의 경우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 지방중재위원회들이 1천위안 미만 사건의 경우 40-100위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단계에서는 쟁의금액단계별로 쟁의금액의 일정비율에 고정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표에서 보듯이 쟁의금액이 크면 클수록 중재비용의 비례는 적어진다.

지방중재위원회 중재신청비용상의 가장 큰 특징은 <표5>에서 살펴보면, 모든 지방중재위원회들이 CIETAC과 비교해 볼 때, 일급 단계 분류 전체에 걸쳐서, CIETAC보다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게 중재신청비용을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재신청비용만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중재위원회들은 경쟁상대인 CIETAC보다 경제성면에서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Reinstein(2005) 역시, 북경중재위원회의 중재비용은 CIETAC보다 저렴하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지방중재위원회가 중재비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sup>34)</sup>

<표 5> 중국 지방중재위원회의 중재비용(단위: 위안)

중재 위원회	1000 이하	1001~ 50000	50001~ 100000	10000~ 200000	20000~ 500000	50000~ 1000000	1000001 이상
해구	100	4.5%+55	3.5%+555	2.5%+1555	1.5%+3555	0.8%+7055	0.4%+11055
안양	80	4% +40	3% +540	2% +1540	1.5%+2540	1% +5040	0.5%+10040
장사	50	4%+50	3%+2010	2%+3510	1.5%+5510	1%+10010	0.5%+15010
형태	100	5%+100	4%+2550	3%+4550	2%+7550	1%+13550	0.5%+18550
일조	50	4%+10	3.5%+260	2.5%+1260	1.5%+3260	0.8%+6760	0.4%+10760

34) 그러나 국제상사중재사건인 경우에도 지방중재위원회의 중재비용이 적은지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

중재 위원회	1000 이하	1001~ 50000	50001~ 100000	10000~ 200000	20000~ 500000	50000~ 1000000	1000001 이상
태안	50	4%+50	3.5%+2010	2.5%+3760	1.5%+6260	0.8%+10760	0.4%+14760
동영	60	5%	4%	3%	2%	1%	0.5%
금화	50	5%+50	4%+550	3%+1550	2%+3550	1%+8550	0.5%+13550
남경	70	4.5%+70	3.5%+2275	2.5%+4025	1.5%+6525	0.7%+11025	0.4%+14525
구주	100	5%	4%	3%	2%	1%	0.5%
제남	50	4%	3.5%	2.5%	1.5%	0.8%	0.4%
연태	50	4%+10	3%+510	2%+1510	1.5%+2510	1%+5010	0.5%+10010
면양	100	5%+100	4%+2550	3%+4550	2%+7550	1%+13550	0.5%+18550
십언	무료	3%	2.5%	2%	1.5%	1%	0.5%
포두	100	5%+100	4%+2550	3%+4550	2%+7550	1%+13550	0.5+18550
호룬패울	100	5%	4%	3%	2%	1%	0.5%
상담	40~100	4~5%	3~4%	2~3%	1~2%	0.5~1%	0.1%이하
형양	40~100	4~5%	3~4%	2~3%	1~2%	0.5~1%	0.25~0.5%
대련	100	4%+100	3%+2060	2%+3560	1.45%+5560	0.95%+9910	0.48%+14660
둥룽	40~100	45%	3~4%	2~3%	1~2%	0.5~1%	0.25~0.5%
남창	80	4%	3.5%	2.5%	1.5%	0.5%	0.3%
래무	50	4%	3.5%	2.5%	1.5%	0.8%	0.4%
혜주	40	4%+40	3%+2000	2%+3500	1.5%+5500	1%+10000	0.5%+15000
서안	100	5%	4%	3%	2%	1%	0.5%
성도	100	5%+100	4%+2550	3%+4550	2%+7550	1%+13550	0.5+18550
류주	40	4%	3%	2%	1%	0.5%	0.25%
선전	100	5%+100	4%+2550	3%+4550	2%+7550	1%+13550	0.5+18550
불산	40~100	4~5%	3~4%	2~3%	1~2%	0.5~1%	0.25~0.5%
광주	200	5%+50	4%+550	3%+1550	2%+3550	1%+8550	0.5%+13550
무한	40	4%	3%	2%	1.4%	0.9%	0.4%
허창	100	5%+100	4%+2550	3%+4550	2%+7550	1%+13550	3%+18550
삼문협	40~100	4~5%	3~4%	2~3%	1~2%	0.5~1%	0.25~0.5%
정주	100	5%+100	4%+2550	3%+4550	2%+7550	1%+13550	0.5%+18550

중재 위원회	1000 이하	1001~ 50000	50001~ 100000	10000~ 200000	20000~ 500000	50000~ 1000000	1000001 이상
낙양	80	4%+40	3%+540	2%+1540	1.5%+2540	1%+5040	0.5%+10040
위해	50	4%+10	3.5%+260	2.5%+1260	1.5%+3260	0.8%+6760	0.4%+10760
치박	50	4%	3.5%	2.5%	1.5%	0.8%	0.4%
빈주	50	4%+10	3.5%+260	2.5%+1260	1.5%+3260	0.8%+6760	0.4%+10760
청도	50	4%+50	3.5%+2010	2.5%+3760	1.5%+6260	0.8%+10760	0.4%+14760
하문	100	5%+100	4%+2550	3%+4550	2%+7550	1%+13550	0.5%+18550
둥릉	40~100	4~5%	3~4%	2~3%	1~2%	0.5~1%	0.25%~0.5%
닝파	100	5%+ 100	4%+ 2550	3%+ 4550	2%+ 7550	1%+ 13550	0.5%+18550
온주	100	5%+ 10	4%+ 510	3%+ 1510	2%+ 3510	1%+ 8510	0.5%+1350
항주	100	5%	4%	3%	2%	1%	0.5%
태주	100	4.5%	3.5%	2.5%	1.5%	0.75%	0.35%
염성	70	4.5%+70	3.5%+2305	2.5%+4055	1.5%+6555	0.7%+11055	0.4%+14555
진강	70	4.5%	3.5%	2.5%	1.5%	0.7%	0.4%
상주	100	5%	4%	3%	2%	1%	0.5%
하얼빈	40~100	4~5%	3~4%	2~3%	1~2%	0.5~1%	0.25~0.5%
오해	100	5%+ 100	4%+ 2550	3%+ 4550	2%+ 7550	1%+ 13550	0.5%+18550
보정	100	5%+ 100	4%+ 2550	3%+ 4550	2%+ 7550	1%+ 13550	0.5%+18550
석가장	100	5%+ 100	4%+ 2550	3%+ 4550	2%+ 7550	1%+ 13550	0.5%+18550
CIETAC	100	5%+ 100	4%+ 2550	3%+ 4550	2%+ 7550	1%+ 13550	0.5%+18550
천진	100	5%	4%	3%	2%	1%	0.5

자료: 각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저자가 직접 계산한 수치임.

그러나 중재에 있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단순히 중재신청비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성 여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국제상사중재의 경우는 중재관련 비용이 적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저명한 중재인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장승화(2010)에 의하면, 실무적 차원에서 중재 역시 중재인에 대한 보수 뿐 만 아니라, 분쟁당사자를 대리하는 국제중재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Reinstein(2005)에 의하면, 중국에서 승소하려면, 그 지역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 지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지역변호사의 판시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를 활용하려면 그 만큼 비용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Peerenboom(2001)에 의하면, 중재판정 집행이 성사된 21개 사건 중 15개 사건이 판시를 활용하여 성사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sup>35)</sup> 중국인 변호사 Zhao Shiyan은 대부분의 중재판정 집행의 장애물은 법적 장애물이 아니고 실무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36)</sup> 따라서 중국에서는 중재비용을 단순히 중재신청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즉 총중재비용은 법적인 중재신청비용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판시를 활용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면, 지방중재위원회들에 대한 경제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6. 전문성

김경배(2008)가 지적하듯이 “좋은 중재는 좋은 중재인이다”라는 말처럼 중재의 성공여부는 중재인에게 달려있다.<sup>37)</sup> 결국 중재란 중재인이 가장 핵심적인 존재이므로 중재인이 얼마나 중재사건에 대하여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公人인 법관의 경우에도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Wang(2008)에 의하면, 전체 법관의 3분의 2가 정규 법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Diamant(2000)에 의하면 농촌 조정인의 경우도 대부분 마을의 여성노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분쟁해결담당자 상당부분은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재의 경우 중재인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중재인의 학력이 나와 있지 않은 관계로 한계가 있다. 자료조사가 가능했던 북경중재위원회중재인 명단상의 371명의 학력은 석사와 박사학위소지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중재인의 직업을 살펴보면, 중재인들은 변호사와 판사가 30%를 차지하고, 경제, 무역 법학 교수 등 학계에서 26%, 실무업계 종사자가 31%를 차지하고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sup>38)</sup> 학력과 직업을 살펴보면, 북경중재위원회 중재인은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모든 지방중재위원회의 소속 중재인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유능한 외국국적의 중재인을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Thorp(2007)에 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CIETAC의 경우에도,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실제로 활용가능한 외국국적의 중재인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sup>39)</sup> 표4에서

35) Peerenboom, Randall, 전제논문, p.12 참조.

36) Reinstein, 전제논문, p.71 참조.

37) 김경배, 전제논문, p.32 참조.

38) 북경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9) CIETAC 중재인의 3분의 1은 외국국적 중재인임. 그러나 낮은 수입료로 인하여 유능한 중재인을 구하기는 어려움.

보듯이 홈페이지에 중재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지방중재위원회 수는 53개소에 불과하다. 이들은 중재인 명단이 있으나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실제로 중재인 명단 자체가 없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중재인의 학력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소수의 지방중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으로 중재에 소양을 갖춘 중재인을 두고 있다는 확증이 없다고 추측된다.

## 7. 집행성

아무리 판정을 잘 내렸다 하더라도 집행이 어렵다면 의미가 없다.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중재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해주고 있다. 뉴욕협약은 절차적 문제만 없다면, 집행물건 소재국 법원은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집행토록 허가해야 한다. 차경자(2005)에 의하면, 중재연구소(1997)가 조사한 CIETAC 섭외중재판정의 집행률은 77%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Peerenboom(2001)이 조사한 CIETAC 섭외중재판정의 집행률은 47%로 나타나서 조사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지방중재위원회의 섭외중재판정 집행 자료는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중국의 사법제도가 서구의 사법제도와는 기본 정서가 달라서 집행력은 근본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Wang(2008)에 의하면, 지역보호주의로 인하여 외부인이 중재판정 집행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연시키도록 그 지방 인민법원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sup>40)</sup> 특히 지방중재위원회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정부는 중재판정부와 사법부 양자에 대하여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중재위원회의 경우, 지방정부의 지역보호주의 압력은 매우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영세한 지방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 집행력은 취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 V. 정책적 함축성

본 연구는 쟁의금액면이나 숫자면에서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국지방중재위원회를 중재기관평가모형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6>에서 보듯이 중재위원회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과 중재절차의 신속성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재신청비용의 관점에서는 경제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재기관의 독립성이나 중재인의 중립성 그리고 중재인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40) Wang, David, 전제논문, p.655 참조.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의 집행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망하였을 때,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는 기존의 대표중재기관인 CIETAC에 비하여, 신속성과 경제성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재기관의 독립성이 아직도 취약하고 중재인의 전문성이나 중립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중재인 부문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중국 지방중재위원회의 평가

평가 기준	평가 결과	비 고
근접성	양호함	경제발전수준에 의하여 근접성에 차이 발생
독립성	취약함	지역보호주의로 인하여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측됨
중립성	취약함	약한 투명성으로 인하여 중재인의 중립성이 취약함
경제성	양호함	CIETAC에 비하여 중재비용을 적게 책정하고 있음
신속성	신속함	CIETAC에 비하여 중재절차를 신속하게 규정하고 있음
전문성	취약함	소수 기관을 제외하고는 중재인의 전문성이 취약함
집행성	취약함	사법제도의 취약성 등으로 집행환경이 열악함

더구나 사법제도 역시 열악하고 경제개혁이후 지방정부의 입김이 강화되고 있다고 본다. 지역보호주의는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행성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용균(2010)이 제시하듯이, 1994년 중재법 제정 이후 섭외중재까지 허용된 지방중재위원회 입장에서는 기존의 섭외중재 전문중재기관인 CIETAC과 경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후발 중재기관인 지방중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중재사건을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의 신속성, 저렴한 중재비용 등을 내세워 기존의 CIETAC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재인의 공정성과 전문성, 중재기관의 독립성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재판정 자체가 공정성을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기업들이 중국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지방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의뢰하는데 동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중재기관 평가모형을 수립하여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중재기관평가모형은 중재수요자의 중재기관에 대한 접근성, 중재기관의 독

립성, 중재인의 중립성, 중재사건 처리의 신속성, 중재비용의 절약을 나타내는 경제성, 중재인의 전문성, 중재판정의 집행성 일곱 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지방중재위원회는 갈수록 그 수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중재위원회의 중재처리건수나 쟁의금액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둘째, 2010년 현재 총 202개에 달하는 중국지방중재위원회 내부구조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북경중재위원회나 상해중재위원회, 심천중재위원회, 무한중재위원회와 같은 큰 규모의 중재위원회가 있는 가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영세한 지방중재위원회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산동성이나 사천성과 같이 지방중재위원회 수가 많은 지역이 있는 반면 청해성, 감숙성과 같이 지방중재위원회수가 3개 미만인 지역도 적지 않아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넷째, 경제발전속도가 높은 지역에 중재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제발전속도가 높은 지역은 기업들의 중재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지역별, 규모별로 차이가 큰 만큼 중재기관의 독립성과 중재인의 중립성은 중재위원회 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여섯째, 중재사건 처리의 신속성은 아무래도 지방중재위원회가 신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경우 지방중재위원회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별 중재위원회들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향후 개별 지방중재위원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곱가지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지방중재위원회의 전체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중재인의 중립성 같은 기준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자료 부족으로 간접적 자료를 토대로 하여 분석한 한계점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경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8권, 제1호, 2008년 3월, pp.31-47.
- 김석철, “칭따오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재절차 통일화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2호, 2005년 8월, pp.37-59.
- 김선정, “중국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 사유인 공서와 법의 지배,”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8권, 제3호, 2008년 12월, pp.23-50.
- 리젠화,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발전과 특징,”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제332권, 2010년 여름호, pp.36-43.



- 성백영, 중국인민공화국 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 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한중법학회 제18회 정례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1998.
- 신군재, “중국 중재제도의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29권 제4호 2004년 8월, pp.211-230.
- 우광명,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6권, 제1호, 2006년 3월, pp.197-224.
- 윤진기, “중국의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2호, 2005년 8월, pp.36-43.
- 윤충원 · 하현수, “중국의 중재법상 중재기관의 약정과 관련한 중재합의 유효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2권 제3호 2007년 6월, pp.65-92.
- 이강빈, “상사중재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역할,”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9권 제2호, 2009년 8월, pp.3-26.
- 이주원,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2004년 6월.
- 이창훈 · 서민교, “중국비즈니스에서 판사의 역할과 시사점,” 「국제상학」, 제22권 제1호, 2007년 3월, pp.235-255.
- 전대규, 「중국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년.
- 정용균, “중국에서의 상사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동향과 제도개선 연구: 외국투자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0권 제1호, 2010년 3월, pp.133-167.
- 정용균 · 이승석, “중국지방중재위원회의 현황과 CIETAC과의 비교,” 「2010년 춘계중재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중재학회, 2010년 5월, pp.68-87.
- 장승화, “국제중재: 중재인의 시각,” 「제6기 중재CEO아카데미 자료-7」,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5월.
-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5권 제2호, 2005년 8월, pp.103-127.
- 홍성규, “중국의 상사분쟁해결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2008년 9월, pp.131-153.
- Chen, Lumming, “Some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13, No. 2, 1996, pp.121-149.
- Clarke, Donald, “Power and Politics in the Chinese Court System: The Enforcement of Civil Judgement”, *Columbia Journal of Asian Law*, Vol. 10, 1996, pp.1-92.
- Diamant, Neil,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China: Beyond Mediation-Centered Approach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4, No.4, August 2000,

pp.523-546.

Fei, Langfang, "Implemen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China: A Case Study,"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 4, No. 2, 2008, pp.123-136.

Hindess, Barry, *Philosophy and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The Harvester Press, 1977.

Johnson, Graeme, "Bridging the Gap Between Western and Chinese Arbitration System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24, No. 6, 2007, pp.565-580.

Oliver Williamson, *Markets and Hierarchies*, Free Press, 1975.

Peerenboom, Randall, "Seek Truth from Facts: An Empirical Study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the PRC",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49, 2001, pp.249-327.

Popper, K. 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Routledge and Kegan Paul, 1963.

Read, Benjamin and Michealson, L., "Mediating the Mediation Debate: Conflict Resolution and the Local State in Chin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2, No.5, October 2008, pp.737-764.

Reinstein, Ellen, "Finding a Happy Ending for Foreign Investors: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di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2005, Vol 16, pp.37-72.

Tao, Jinzhou and Clarisse von Wunschheim, "Articles 16 and 18 of the PRC Arbitration Law: The Great Wall for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23, No. 2, 2007, pp.309-326.

Thorp, Peter, "The PRC Arbitration Law: Problems and Prospects for Amend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24, No. 6, 2007, pp.607-622.

Wall, James and Michael Blum, "Community Medi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5, No. 1, 1991, pp.3-20.

Wang, David, "Judicial Reform in China: Improving Arbitration Award Enforcement by Establishing a Federal Court System", *Santa Clara Law Review*, Vol. 48, 2008, pp.649-679.

Wang Wenying, "Distinct Features of Arbitration in China: A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23, No. 1, 2006, pp.49-80.

Yuen Peter, "Arbitration Clauses in a Chinese Context",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24, No. 6, 2007, pp.581-596.

## ABSTRACT

### A Study of Chinese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Based on Arbitration Institution Evaluation Model

Yong-Kyun Chung

Seung-Suk Le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in China based on arbitration institution evaluation model. Most of the literature on Chinese arbitration committees only focuses on CIETAC. However, the promulgation of 1994 Chinese arbitration act allows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to deal the arbitration cases related with foreign element. Before 1994, only CIETAC and CMAC handle the arbitration cases related with foreign element. For the evaluation of the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this study establishes the arbitration institution evaluation model. This model has seven evaluation criteria: accessibility, independence, neutrality, rapidity, economy, professionalism, and extent of enforcement.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have the strengths in the fields of accessibility, economy and rapidity. However, they are deficient in the area of neutrality,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Seco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hinese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is not equal in China. The number of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is big in the high growth region such as Shandong province.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is small in the economically stagnant area. Third, the size and activity of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are various. Some of them are very active in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in China. For example, Beijing Arbitration Committee(BAC), Wuhan, Quanzhou Arbitration Committee play the important role in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However, the large part of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is financially weak and depend on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Key Words** : local arbitration committees, arbitration institution evaluation model, China